

포장재 제질 · 구조 평가제도 주요내용



환경부



발표 순서

I 추진 배경 및 경과

II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III 향후 일정

I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촉진제도 미비**

-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이행 의무조항 부재
-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기준 미준수 시 제재 조항 부재

대책

포장재 재질 · 구조개선 제도 **실효성 확보**

-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등 **사용 금지**
-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포장재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기대효과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 유도**

- (소비자)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 구매 유도
- (의무생산자) 분담금 차등화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게 설계

추진 경과

자원재활용법 개정 · 공포(2019년 12월 25일 시행)

2018. 7~9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원발의

- 이찬열 의원('18.7.19.) 및 임이자의원('18.9.11.)이 각각 대표발의

2018. 12월

「자원재활용법」 개정 · 공포

- 국회 환노위('18.11.29.), 법사위('18.12.5.), 본회의('18.12.7.) 의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포('18.12.24.)

2019. 4~7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운영
- ※ 제1차: 4.30.~5.15., 제2차: 6.12., 제3차: 6.30.~7.2., 총 10회

2019. 1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

- 하위법령안 입법예고('19.8.29.)

Ⅱ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포장재 등급평가*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환경공단 검토·확인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적용

평가 결과 표시*

캔류
철
재활용 우수

유리
재활용 어려움

* 분리배출표시와 병기

포장재 등급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의무화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평가 대상

사업자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포장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포장재의 종류	대상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병, 발포합성수지, PSP, PVC - 기타 단일·복합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 제품, 의복류, 위생용 종이제품 ○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타 제품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의 플라스틱 용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봉투 제외) 	

평가 제외 대상 포장재

- EPR 비대상 및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제품·포장재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 매출·수입액 기준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업 종	포장재의 출고량·수입량 기준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 제외)포장재를 사용하는 음료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4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1톤 이상 (전년도 포장재 무게 기준)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위 제품류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0.8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0.3톤 이상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위 제품류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10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3톤 이상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 제외)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4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1톤 이상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0.8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0.3톤 이상
PET, 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4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1톤 이상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0.8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0.3톤 이상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 매출·수입액 기준 :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업 종	포장재의 출고량·수입량 기준
합성수지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개인용컴퓨터(모니터, 자판 포함)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10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3톤 이상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위 제품류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0.8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0.3톤 이상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종합소매업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4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1톤 이상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 브레이크액,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4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1톤 이상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사용하는 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제조업자 : 연간 출고량 4톤 이상 수입업자 : 연간 수입량 1톤 이상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평가 기준

(근거 규정)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환경부 고시)

※ '19.10.30일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9-0808호)참조

- 종이팩, 유리병 등 9개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제시
- 평가단위 : 포장재 재질·구조
-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등급을 4개 등급으로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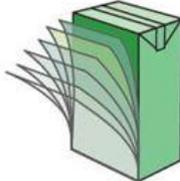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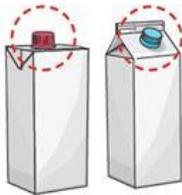
- 9개 포장재에 대한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제시

※ 육안판정, 자체시험 및 기기분석 방법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1/12

종이팩 포장재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몸체	알루미늄 첩합 구조 미사용			알루미늄 첩합 구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폴리에틸렌 2. 종이 3. 폴리에틸렌 4. 알루미늄호일 5. 폴리에틸렌 6. 폴리에틸렌
마개 및 잡자재	미사용	몸체와 분리 가능한 빨대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 (PE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가 포장재 전체 중량의 10% 이내)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또는 성형 구조물 (PE재질의 마개 및 잡자재가 포장재 전체 중량의 10% 초과)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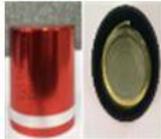
유리병 포장재 1/2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몸체	무색, 갈색, 녹색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	표면 코팅 또는 도색	
							
라벨	미사용	종이 재질	비접(점)착식 합성수지 재질 (절취선 포함)	비접(점)착식 합성수지 재질 (절취선 미포함)	접(점)착식 합성수지 재질	몸체에 직접 인쇄	금속혼입재질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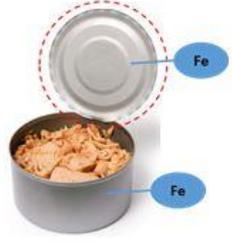
유리병 포장재 2/2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마개 및 잡자재	뚜껑·테 일체형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마개	뚜껑·테 분리형	몸체와 분리 불가능
						
	마개 내부 합성수지 재질 코팅 등	분리가 가능한 잡자재		코르크 잡자재	금속성 물질 잡자재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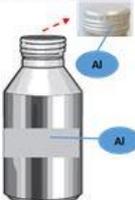
금속캔 포장재(철캔)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몸체	<p>금속 철캔</p> 		
라벨	<p>몸체에 직접인쇄</p> 	<p>직접인쇄 외 합성수지 라벨 등</p> 	
마개 및 잡자재	<p>몸체와 동일한 재질</p> 	<p>알루미늄 재질</p>  	<p>합성수지 재질의 뚜껑 사용</p>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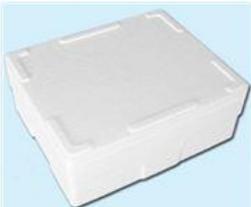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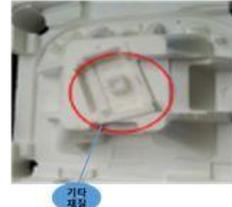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몸체	<p>금속 알루미늄캔</p> 		<p>복합재질 구조(알루미늄 외)</p>
라벨	<p>몸체에 직접인쇄</p> 	<p>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p> 	<p>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p> 
마개 및 잡자재	<p>몸체와 동일한 재질</p> 	<p>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가 가능)</p> 	<p>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p>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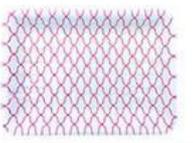
일반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몸체	백색 단일재질 	검은색 EPE, EPP 재질 	복합재질 구조 (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 		백색 외 색상 
	몸체와 동일한 재질 	몸체와 다른 재질 라벨 (몸체와 분리 가능) 	몸체에 직접 인쇄 	몸체와 다른 재질 라벨 (몸체와 분리 불가능) 	PVC 계열 재질 
라벨, 마개 및 잡자재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7/12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구분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몸체	백색 단일재질 	복합재질 구조 (기타 재질과의 조합 포함)	백색 외 색상  		
	몸체와 분리 가능 미사용 		몸체와 동일재질 	몸체에 직접 인쇄 	몸체와 다른 재질 라벨 (몸체와 분리 불가능) 
라벨, 마개 및 잡자재	최우수 몸체와 다른재질(분리 가능)  	우수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8/12

페트병 포장재 1/2

구분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단일재질 무색	녹색 색상 (먹는샘물음료 외)	녹색 색상 (먹는샘물음료 외)	PET-G 재질 혼합	녹색 이외의 색상 (먹는샘물음료 외)	유색 (먹는샘물음료)	복합재질
몸체							
마개 및 잡자재	비중 1미만 합성수지 재질	무색 페트 단일재질		비중 1이상 합성수지 재질 (페트 제외)	PVC 계열 재질	합성수지 외 재질	
	 비중 1미만	 페트		 비중 1이상	 PVC	 금속 마개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9/12

페트병 포장재 2/2

구분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라벨	비중 1미만 합성수지 재질		비중 1이상 합성수지 재질		비중 1이상 합성수지 재질 (절취선 미포함)	열알칼리성 미분리 접(점)착제 사용	몸체에 직접 인쇄
	비점(점)착식 (절취선 포함)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라벨 면적 0.5% 이내 (가장자리 미도포 포함))	비점(점)착식 (절취선 포함)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가장자리 미도포 포함)			
	최우수						
	우수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병 전체 면적 20% 라벨 면적 60% 이내 (가장자리 미도포 포함))		비중 1미만 합성수지 재질		PVC 계열 재질	합성수지 외 재질
	비점(점)착식 (절취선 미포함)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가장자리 미도포 미포함)	비점(점)착식 (절취선 미포함)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 (가장자리 미도포 미포함)			
	최우수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10/12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1/2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몸체	단일재질	무색 단일재질 (페트 재질에 한함)		PET-G 재질	유색 PET 재질	PVC 계열 재질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11/12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2/2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미사용	비접착식	접착식	직접인쇄	PVC 계열 재질		
라벨, 마개 및 잡자재	PET 재질	 <p>페트</p>	 <p>비접착식</p>		 <p>직접인쇄</p>	PET 재질	 <p>PVC</p>
		미사용	직접인쇄			PVC 계열 재질	합성수지 외 재질
		 <p>단일재질</p>	 <p>직접인쇄</p>			 <p>PVC</p>	
	PET 이외 재질	몸체와 동일한 재질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 재질 (몸체와 완전분리 가능)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가능)		PET 이외 재질	몸체와 다른 재질 (몸체와 분리 불가)
	 <p>PP</p>		 <p>※ 일부 잔존</p>		 <p>종이라벨</p>	 <p>금속테두리</p>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종류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세부기준 및 예시 12/12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페트병, 발포합성수지 제외)

구분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몸체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알루미늄 20 μ m이하 사용 포함)		PVC 계열 재질	
		알루미늄(20 μ m이하)이 증착된 복합재질(PP+AL+PP)		합성수지 외 재질 병합사용	
라벨, 마개 및 잡자재	합성수지 재질	몸체에 직접 인쇄		PVC 계열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몸체와 분리 불가능)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절차

(근거 규정)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내지 제3조의4

1. 자체평가 및 평가검토 신청서 제출
(포장재 재질·구조별)



2. 제출서류 검토

(서류검토 외 추가확인 필요시)

시험분석, 현장방문

3. 평가 확인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이의가 있는 경우)

① 이의신청
(통보 후 30일 이내)

② 결과통보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평가를 받은 이후 제품출시 가능
(다만, 환경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평가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대상)

4. 평가결과 표시
(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

※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계도기간 운영 및 기존제품 특례제도 운영

- 평가 대상 업체 및 제품·포장재 수 등을 감안, 등급평가에 대해 **법 시행 후 9개월간** ('19.12.25. ~ '20.9.24.) **계도기간 운영**

-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

기존제품 '19.12.25. 이전부터 제조·수입되고 있던 제품으로 법 시행 이후 계속 출시되는 제품 중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해 환경공단 검토 확인

구분	유리병, 페트병	종이팩, 금속캔(철, 알루미늄), 발포합성수지(EPS), 폴리스티렌페이퍼(PSP),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환경공단 검토 대상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 포장재	해당 없음
환경공단 검토 유예대상	'재활용 보통' 등급 이하 포장재	모든 등급 포장재

신규제품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하여 환경공단 검토 확인(기확인을 받은 포장재는 신청 비대상)

- (**공단 검토 대상**) 재질·구조를 개선한 포장재, 새로운 재질·구조를 사용한 포장재
- (**공단 검토 비대상**)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 신청 2/3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대상/비대상

	제출 대상	제출 비대상
기존제품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등급의 포장재 사용 제품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사용 제품
신규제품	- 재질·구조를 개선한 포장재 사용 제품 -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 사용 제품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사용 제품

신청서 작성기준 포장재 재질·구조별 작성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 신청 3/3

신청서 제출 시기

구분	제출 기한
○ 기존제품	○ 유리병, 페트병 중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 포장재 : '20.9.10.(공단 검토·확인기간 고려) ○ 기타 포장재 : '20.9.24.
○ 신규제품	
- 계도기간 중 출시 제품	○ 기존제품 포장재와 동일
- 기존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개선한 포장재	○ 제품 출시 전
- 새로운 재질·구조의 포장재(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포함)	○ 제품 출시 전
- 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은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구조 사용 포장재	○ 신청서 제출 비대상

계도기간('19.12.25.~'20.9.24.) 중 신규 출시된 제품의 포장재와 기존제품 포장재를 1개의 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 가능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자료 관리 및 제출 2/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고 **서식**은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와 공통 사용 가능**
 ※ 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와 구분하여 별도 제출

신규제품 출시 전 대상 검토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과 **신규제품 포장재의 재질·구조 비교·검토**
- **기 확인**을 받은 포장재의 **재질·구조와 동일**할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상품명**을 추가 기재
- **새로운 재질·구조**인 경우, **자체평가**를 거쳐 환경공단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 신청서** 제출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확인서

	기존 제품	신규 제품
발급 대상	- 유리병, 페트병 중 '재활용 우수' 등급 이상 포장재	- 재질·구조를 개선한 포장재 - 새로운 재질·구조 포장재
발급 유예	- 종이팩 - 금속캔(철, 알루미늄) - 발포합성수지(EPS, EPP, EPE) - 폴리스티렌페이퍼(PSP) -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 유리병, 페트병 중 '재활용 보통' 이하 등급	- 해당 없음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표시

표시 대상

●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제조되는 제품의 포장재
- 분리배출 표시 제외 포장재 중 PVC·PVDC 재질의 필름·시트형 포장재

표시 면제 대상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각목의 포장재

-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등급 확인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 포장재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평가 결과표시 기준 및 방법

기준	방법
표시방법	- 인쇄, 각인 또는 라벨링
표시색상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표시위치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시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기타	-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평가결과 표시 - 외포장된 수입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평가결과 표시 가능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평가 결과 표시 기준일

	구분	표시 대상 제품 제조일
기존제품	- '20.9.24일까지 환경공단의 재질·구조 평가 확인	- '21.3.25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 - 표시 연장 신청시 '21.12.25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
신규제품	- 계도기간 중 제품 출시 후 '20. 9.24일까지 환경공단의 재질·구조 평가 확인	- '21.3.25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 - 표시 연장 신청시 '21.12.25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사용 제품	-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제조되는 제품(다만, 평가확인을 받은 이후 최초 제조제품부터 표시 가능)
	- 기 확인받은 포장재와 재질·구조가 동일한 포장재 사용제품	- 최초 제조제품부터 표시 가능

1.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표시

등급표시 도안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재활용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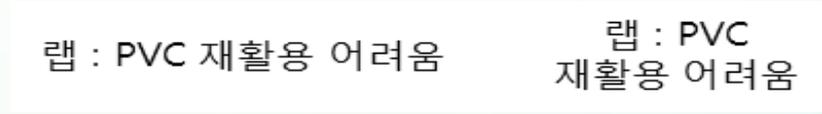
뚜껑 :HDPE
재활용 보통

-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으로 표기

- 주 재질 외 뚜껑, 접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개선 대상/예외 대상

	개선대상(사용금지) 제품 ·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대상 적용 예외 (사용가능 제품 · 포장재)
PVC (PVCD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대상 적용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포함 (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 수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 압박포장 형태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용유지류 ○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한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햄류·소시지류(어육소시지 포함) ○ 축·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먹는 샘물 및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색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페트병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 환경부장관이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한 제품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사용금지 시행일 '19. 12. 25.

개선명령 의무생산자가 개선대상(사용금지) 포장재를 사용한 경우

- 개선명령 전 의무생산자가 사전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통지 후 10일 내) 후 **1년 이내(최대 3년)*** 개선하도록 통지
- * 제조공정의 변경 필요 등으로 1년 이내 개선이 어려운 경우 **개선기간 2년 추가 연장 가능**

개선명령 이행 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기한	제출양식	제출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을 받은 제품의 포장재	개선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서식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개선기간 연장 신청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개선명령 이행이 곤란한 경우

- 제조공정 변경 또는 타 법에 의한 포장재의 안전성 테스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개선명령 이행이 곤란한 경우
- **(신청기간)** 당초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 이내**
- **(제출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의무생산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중단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 기술적 한계, 판매중단 시 국민 건강 등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를 임시 허용하는 기간으로 1년 이내 허용
- 다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연장 가능

부과금액 10억원 이하(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 과징금 = 제조·수입·판매 허용기간 × 1일당 과징금
- 1일당 과징금 = 1일당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 자원재활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

부과대상 환경부장관이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추진 결과, 환경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과징금 부과사유 해당여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희망여부, 일정기간 내 개선명령 이행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개선대상 포장재 제외 신청

신청대상 포장재 재질 변경시 제품의 기능장애 발생, 제품 제조공정 변경 및 대체 재질 상용화 곤란 시

(예시)

-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시 제품의 변질 등 품질관리에 애로가 있는 먹는 샘물 및 음료 제품
- 일반 접착제 사용금지에 따른 생산설비 전면 교체가 필요한 먹는 샘물 및 음료 제품
-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춰 별도 재활용이 가능한 PVC 재질 포장재 사용 제품 등

처리절차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절차 1/2

환경부
의무생산자

1. 개선대상 포장재 공포
 '19.8.29일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9-0645호)참조

2. 개선대상 포장재 전수조사 및 개선가능여부 검토

(개선 곤란사유 비해당시)

3. 개선대상 포장재의 개선계획 수립

4. 개선대상 포장재 사용여부 지도·점검

(개선대상 포장재 사용시)

5. 개선 명령안 통지
 (개선명령 내용, 기간 등)

6. 개선명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예외 대상 판단시)

개선 예외대상 신청

실태조사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 심의

(신청 수용)

제품 제조·판매

(신청 불수용)

(예외대상 판단시)

2.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중단명령

절차 2/2

환경부
의무생산자



Ⅲ 향후 일정

향후 일정

~ 2019. 12월초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 2019. 12. 24.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공포

감사합니다.